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8차 회의

의안번호	제2026-20호	심 의 · 의 결 사 항
심 의·의 결 일자	2026. 8. 13.	
공개여부	공개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제 출 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출일자	2026. 8. 13.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I. 개요

❖ 본 계획안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적용 대상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른 계획임

□ 배경 및 경과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요청('26.3.31.) 사항의 일부에 대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추진하기로 의결 (2026년 제7차 회의, '26.7.16.)

<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사항 >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확대>

-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확대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한다.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확보>

-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확보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한다.
- 신설 과목은 역사 및 사회 현상에 대한 탐구 과정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며 미디어 수용 태도를 함양하는 고등학교 사회 교과군 융합 성격의 과목으로 개발한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반영>

-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하기로 한 위의 사항을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 과정에 반영한다.

- 중·고등학교 역사과 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에 대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및 모니터링단 검토 실시('26.7.22.~8.10.)

·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결과

-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비중 확대,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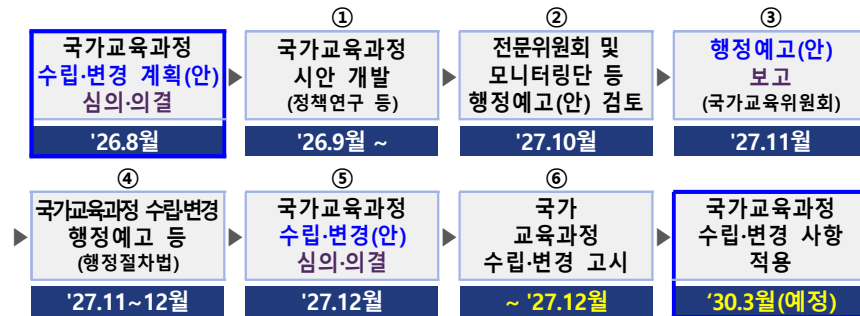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의견 수렴 결과

-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의 추진 일정 및 내용에 대해 대부분 동의함

II. 추진 계획

1 추진 일정(안)

-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심의·의결 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시안 개발 및 검토,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등 법령상 절차 추진



※ 세부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추진 내용

- (시안 개발) 정책연구를 통해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비중 확대,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마련
- (개발 내용) 총론(과목명 등) 반영 사항 마련 및 교과 교육과정(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 개발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병행하여 개발

[연구 방향]

- (방향)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과목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발
- (중학교)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성취기준 비중 상향 조정을 위한 교육과정 시안(△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 개발
- (고등학교) 총론 반영 사항 마련(과목명 등), 역사 및 사회 현상에 대한 탐구 과정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며 미디어 수용 태도를 함양하는 고등학교 사회 교과군 융합 선택과목의 교과 교육과정 시안(△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 개발

- (연구진 구성) 현장 교원, 교육과정·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연구진 구성 방향]

- (중학교) 중학교 역사 교사, 역사교육 관련 학계 전문가 등으로 균형 있게 구성
- (고등학교) 고등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사, 교육과정·학계 전문가 등으로 균형 있게 구성

- (자문·검토 등) 시안 개발 과정에서 현장 적합성, 교육적 타당성 제고를 위해 현장 교원, 교육과정·학계 전문가 등의 자문·검토, 의견 수렴 실시

- (시안 검토) 시안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및 모니터링단 의견 수렴* 등 실시

*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제10조

- 현장 교원, 학생, 학부모, 교육과정·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각적이고 폭넓은 의견 수렴 실시

- (행정예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심사*, 행정예고** 등 실시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및 심사 등 실시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20일) 실시

- (시안 확정) 수립·변경(안) 심의·의결 → 확정·고시(~'27.12월, 예정)

III. 향후 일정(안)

- (의결 시)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26.9.~)

붙임 1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결과

I. 검토 개요

구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건명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주요 내용	① (추진 일정)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이 2030학년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 시안 개발('26.9.) → 검토 → 행정예고(안) 보고 → 행정예고 등('27.11~12.) →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심의·의결('27.12) → 고시('27.12.) ② (추진 내용)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비중 확대,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개발

II. 검토 기간

검토 기간	'26. 7. 22. ~ 8. 10.
-------	----------------------

III. 검토 결과

【검토 의견】

- ① 추진 일정
- 시안 개발,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의견수렴, 행정예고 등 일정이 타당하게 계획됨
 - 국가교육과정 개정 이후 교육부 후속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추진 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됨
- ② 추진 내용
-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비중 확대,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위한 시안 개발 및 연구진 구성 방향, 시안 검토 등 추진 내용이 적합함
 - ※ 연구 결과의 현장 적합성, 교육적 타당성 제고를 위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대로 균형 있는 연구진 구성,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 등 추진

【종합 의견】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비중 확대,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6. 8. 10.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2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의견수렴 결과

I. 의견수렴 개요

구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건명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주요 내용	① (추진 일정)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이 2030학년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 시안 개발('26.9.) → 검토 → 행정예고(안) 보고 → 행정예고 등('27.11~12.) →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심의·의결('27.12) → 고시('27.12.) ② (추진 내용)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비중 확대,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개발

II. 의견수렴 기간 및 참여 현황

기 간	'26. 7. 22. ~ 8. 10.				
참 여	계	교원	학생	학부모	전문가
	243명 (75.2%)	161명 (72.9%)	25명 (73.5%)	26명 (76.5%)	31명 (91.2%)

III. 주요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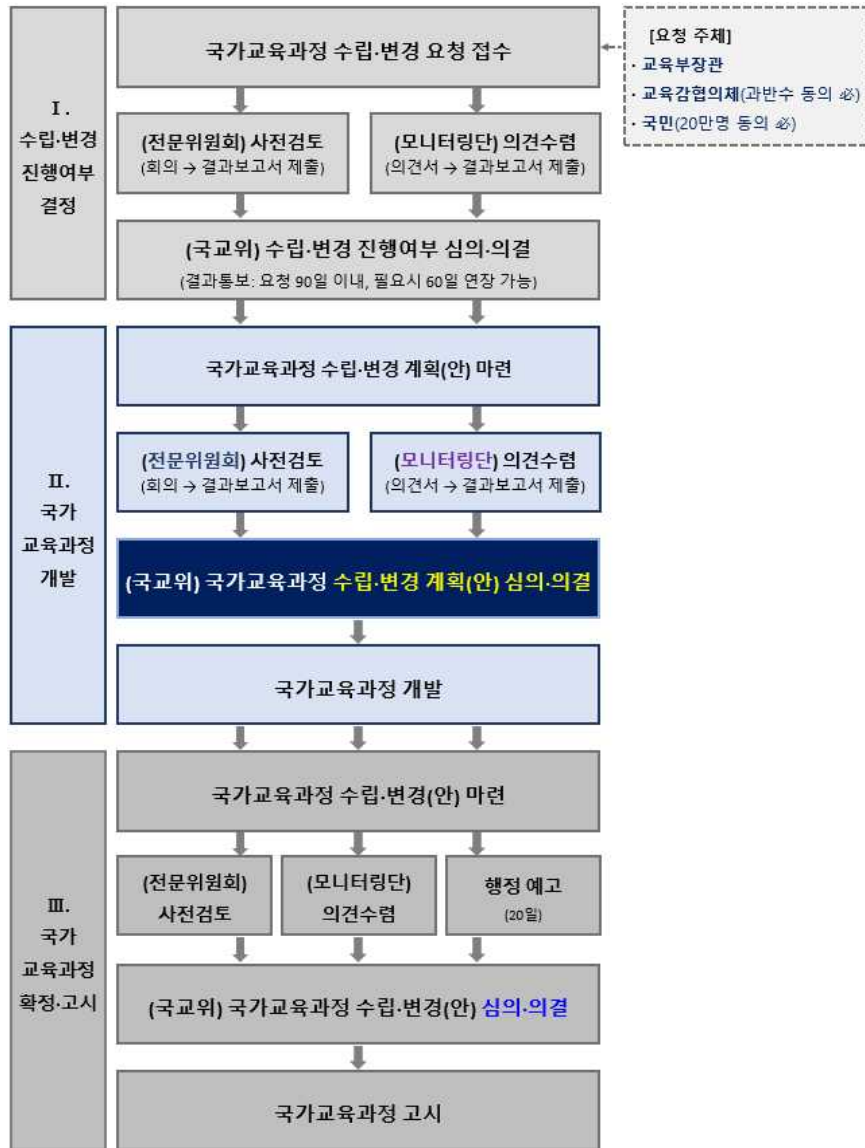
- ①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의 추진 일정에 대해 대부분 동의함
- 추가 의견으로 △시안 개발(정책연구 등) 시 충분한 기간 확보 필요, △현장 의견수렴 확대, △시안 개발 과정에서 현장 검토 등 환류 절차 마련 등이 제시됨
- ②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의 추진 내용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였으며, 추진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 의견을 제시함
- 현장 소통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시안 개발(정책연구 등) 필요 의견 등이 제시됨
- ③ 기타 의견으로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육부·시도교육청의 현장 지원 방안 마련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됨

2026. 8. 10.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단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하

□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



□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관련 법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0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 등)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1. 교육부장관이 새로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사·도 교육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20만명 이상인 경우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청 등이 있는 날(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국민의견 게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의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 일정·내용 및 적용 대상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⑤ 국가교육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제18조 제1항제2호의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